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20171218, 의견표명)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민원표시 2BA-0000-000000

신청인 ○○◇

총○ ○○시 ○○구 ○○◇로 00길 00-00 ○○빌 000호

피신청인 한국○○◇◇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총○ ○○ ○○구 ○○동 000-00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 하던중 ○○◇
□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건물보상을 받은 후 사망한 ○○○의 상속자를 확인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를 인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은 신청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7. 12. .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의 부친인 ○○○은 총○ ○○ ○○구 ○○동 000-00 소재 주택(이하 '이민원주택'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중 ○○◇□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이
민원 주택에 대한 보상을 받은 후 사망하였으니, 위 ○○○의 상속자에게 사망한○○○(이하 '亡○
○○'이라 한다)이 취득할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가 상속되었음을 인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사업에 있어 이주대책기준일인 2005. 11. 2. 부터 이 민원 사업에 따른 최초 보상개시일인
2009. 5. 6.까지(이하 '이 민원 이주대책 기준기간'이라 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를 이주대
책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亡○○○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유는 인정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 민원 주택 소재지가 아닌 총○ ○○군 ○○면 ○○리 000-0 (이하 '이 민원 ○○군 주소지'라
한다)로 되어 있어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가 불분명한 상태여서 亡○○○의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2005. 11. 2. 사업구역 지정 공람공고(이주대책기준일), 2008. 5. 2. 개발계획 승인(총청○○고시 제2008-00호)되어 추진 중이다.

나. 건물등기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2층 조적조 슬라브지붕 형태인데 소유권은 ㄱ○○○이 2003. 10. 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피신청인이 ㄱ○○○으로 부터 2009. 7. 28.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다.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이 민원 이주대책 기준기간(2005. 11. 2. ~ 2009. 5. 6.) 중에 이 민원 주택에 주민등록된 자는 신청외○△○(ㄱ○○○의 부인), ○□○(신청인, ㄱ○○○의 딸), 신청외 ○○○△(ㄱ○○○의 아들)이며, ㄱ○○○의 주민등록지는 이 민원 ○○군 주소지이고 ㄱ○○○은 2013. 1. 23. 사망하였다.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항공사진을 보면, 주민등록상 망○○○의 거주지로 되어있는 이 민원 ○○○군 주소지는 지목이 `도로`인 부지(면적 23㎡)인데 건물이 없는 상태이다.

마. 신청인이 이 민원 이주대책 기준 기간(2005. 11. 2. ~ 2009. 5. 6.) 중에 ㄱ○○○이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시 ○○구의 지방세 부과 자료를 보면, ○○○의 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 건물 재산세와 2006년·2007년 부동산 중개업에 따른 면허세에 대하여 납세정보로 납세자의 주소는 이 민원 ○○○군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과세정보로 고지서 발송 거주지는 이 민원 주택 소재지로 되어 있음

- 의료재단○○병원이 발급한 입/퇴원확인서에 따르면, ○○○은 2005. 6. 25. ~ 26. 주소지를 이 민원 주택으로 하여 입원 치료함

- 천주교 ○○교구가 발행한 세례증과 세례성사 증명서를 보면, ○○○은 2008. 10. 15. '○○□◇'로 세례를 받았으며, 세례시 주소지는 이 민원 주택 소재지로 되어 있음

- □협에 제출하여 2009. 1. 5. 처리된 ○○○의 거래신청서를 보면, 운전면허증이 거래신청에 붙어 같이 복사되어 있는데, 자택주소는 이 민원 주택 소재지로 되어 있음

- 매도인 ○○○과 매수인 □◇○간에 2007. 10. 23 체결한 총○ ○○군 ○○면 ○○리 산00-0 외 1필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의 주소는 이 민원 주택 소재지로 되어 있음

- (주)○○◇가 발행한 고객가입이력 및 통신요금납부사실 증명원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전화는○○○명의이며 요금은○○○에게 부과함

- ○○◇□△연합회 발간 창립십년사 책자를 보면, 회원자격은○○시에 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는데 ○○○은 2000. 9. 1. 연합회에 가입하고 상조회 총무·감사·부회장을 거치고 2008년 제8대 회장에 취임함

바. ㉸의 부인인㉹의 진술에 따르면, 남편은 가족과 함께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살았음 이 사실이며, 별도 건물도 없는 이 민원㉸군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것은 남편이㉸군 일대의 부동산 매매를 주로 하였기에 때문으로 추정한다고 한다.

4. 판 단

가. 관계 법령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한다) 제78조 제 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 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후단 생략>”라고 하고 있다.

2) 법원은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에 따라 장차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선정될 자의 지위는 그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당해 수용가옥에 거주하여 온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 관한 한 일종의 재산권의 성격을 가져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수원지방법원 2004.11.24. 선고 2004구합 1927판결참고)하며, 거주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주민등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건물의 소유자가 그곳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대전지방법원 2007.1.17. 선고 2006구합3300판결 참고)고 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이주대책 기준기간(2005. 11. 2. ~ 2009. 5. 6.)중에 ㉸의 주민등록상거주지는 이 민원 ㉸군 주소지로 되어 있어 위 기간 중의 ㉸의 실제 거주지를 명확히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위 기간 중㉸에 대한 과세관청의 2005년~2009년 세금고지서 발송지가 이 민원주택 소재지로 되어 있는 점, ㉸은 2008년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시 주소지가 이 민원 주택 소재지임을 천주교 ㉸교구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 ㉹연합회의 회장 등으로 활동한 점, 이 민원 주택에 ㉸의 부인 및 자녀들이 거주한 점 및 ㉸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이 민원㉸군 주소지는 별도 건물이 없는 지목이 도로인 점 등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본다면 이 민원 이주대책 기준기간(2005. 11. 2. ~2009. 5. 6.)중의 ㉸의 생활의 근거지는 이 민원 주택 소재지로 보는 것에 대하여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인다. 이에 피신청인은 ㉸이 이 민원 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상속자를

확인하여 이주자대책 대상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은 이 민원 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가 있음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인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